

- 9.22일 주민협의체(시영단지측)와의 협의
 - 주민동의하에 협의체에서 요청하면 노원구에서 쓰레기 반입
 - 2호기를 재측정하여 기준초과시 시설폐쇄 등을 수용토록 하고 시설의 안정성이 입증되면 시·구에서 책임지고 홍보
 - 9.23일 시영단지 주민 3,150세대의 동의로 쓰레기 반입토록 통보
 - 9.24일 쓰레기 반입 및 2호기 가동
 - 9.27일 주민협의체위원 및 시영단지 대표와 간담회
 - 9.29일 서울시·협의체위원(시영단지측) 및 노원구 합동 간담회
 - 9.29일 유사시설에서 효과가 입증된 활성탄 현탁액 주입설비를 설치후 가동중에 있음
- 향후계획
- 문제가 된 2호기는 주민들이 추천한 2개의 검사기관에서 주민들의 입회하에 재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코자 함
 - 9.25일 주민협의체에 측정기관 선정 통보토록 요청

.....

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경 위

- 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의안번호 : 제 319 호
- 다. 제출일자 : 2003. 9. 26
- 라. 회부일자 : 2003. 9. 29

2. 제 안 사 유

- 환경보전을 위한 시의 책무에 친환경제품의 생산·구매 확대와 서울의제 21제정·실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,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,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 요 골 자

- 가. 시의 환경보전 기본원칙에 환경오염의 사전예방과 자원·에너지 절약 및 자원순환의 원칙을 추가함.(안 제3조제4호·제6호)
- 나. 환경보전을 위한 시의 책무에 친환경제품의 생산·구매확대, 서울의제 21 제정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. (안 제5조제1항제4호·제10호)
- 다. 환경보전을 위한 자치구의 책무에 환경오염방지, 자연환경 보전, 유해 화학물질의 관리, 지방의제 21 제정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.(안 제6조)
- 라.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.(안 제26조제3항)
- 마.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시민을 환경지도위원으로 위촉하여 환경교육 및 시민계도를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26조제4항)

4. 참 고 사 항

- 가. 관계법령 : 환경정책기본법(제3조·제7조·제7조의2·제7조의4
- 제14조의3·제28조·제37조) -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- 다. 기 타
 - (1) 개정조례 전문 : 별 첨
 - (2) 입법예고(2003. 8. 30 ~ 2003. 9. 18) 결과 : 의견 없음.
 - (3) 규제심사 : 규제개혁위원회 협의(2003. 9. 20)결과, 규제사무 없음

5. 세 부 내 용

- 본 개정안은 서울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의 책무중 친환경제품의 생산·구매 확대와 서울의제 21 제정·실천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, 환경정책기본법(이하 법)의 개정에 따른 일부내용을 보완하며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으로써 그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.
- 조례 제3조(기본원칙) 제4호의 “원인자부담의 원칙”을 “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원인자 비용부담의 원칙”으로 한 것은 법 제7조의2(환경오염등의 사전예방) 내용을 추가한 것이고, 제6호를 신설한 것은 법 제7조의4(자원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촉진)의 내용을 추가한 것임.
- 안 제4조(정의)제2호의 “자연의 상태”를 “자연의 상태(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)”로 한 것과 제3호의 “악취 등”을 “악취, 일조 등”으로 한 것, 제4호의 “악취 등으로서”를 “악취, 일조방해 등으로서”로 한 것은 법 제3조2호~4호까지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고, 제7호를 신설한 것은 법 제7조의2에 규정된 “친환경제품”의 용어를 정의하기 위한 것임.
- 안 제5조(시의 책무)제1항제4호에 “친환경제품의 생산·구매 확대”를 추가한 것은 법 제7조의2 취지를 반영한 것이고, 안 제10호를 “서울의제 21 제정 및 실천에 관한 사항”으로 한 것과 동조 제10호를 안 제11호로 한 것은 서울특별시녹색서울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8조제2항에 의하여 시의 책무에 추가한 것임.
- 안 제6조(자치구의 책무)는 조례에 의한 시의 책무와 같이 환경오염 방지, 자연환경 보전, 유해화학 물질의 관리, 지방의제 21 제정 및 실천 등 자치구의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고, 안 제7조(사무자의 책무)제2항중 “사업자는”을 “사업자는 원료의 획득”으로 함으로써 법 제7조의2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며, 제2장의 제목 및 제11조제1항 ~ 제3항, 제5항에서 “환경기본계획”을 “환경보전계획”으로 한 것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용어를 통일시키기 위한 것임.
- 조례 제11조 제4항에서 시장이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, 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, 자치구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삭제하고 그 기능을 녹색서울시민위원회에 부여한 바,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법 제37조에 명시된 필수 설치기관임에도 조례로 그 기능을 타 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지 의문시되어 법과 조례상 모순부분의 정리가 요구된다고 판단됨.
- 조례 제12조(자연환경의 보전)는 별도의 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의 내용이 중복되므로 제2항과 제3항을 삭제하고, 제4항을 변경한 것이며, 안 제13조(지구환경의 보전 및 국제협력 등)의 제2항을 신설한 것은 지구환경과 관련된 동 조례 제24조를 가져와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임.
- 조례 제15조 제3항의 삭제는 배출허용기준의 설정에 대하여 본 조례에서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조례 등 각 개별조례로 정하기 때문이며, 안 제16조 제1항, 제2항은 법 제28조에 의하여 용어를 “환경영향검토”에서 “환경영향평가”로 변경하고 조문을 정리한 것임.

6. 검토 의견

-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.
 - 동 조례안은 2003. 9. 26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319호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.
 - 동개정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친환경제품의 생산, 구매 확대와 서울의제21제정, 실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입니다.
- 다음은 주요사안별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 - 첫째 용어 정의 보완에 대한 의견입니다.

- 동개정 조례안중 제 5조(시의책무), 제6조(자치구의책무), 제26조(시민참여등)에 “서울의 제21”이란 용어가 추가되었습니다. 서울의제21은 용어자체가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고는 하나 조례상에 처음 추가되는 용어이므로 이는 동조례안 제2조(정의)란에 추가하여 우리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. 조례란 법의 일종으로써 우리 서울특별시의 법입니다. 법이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어야만 실효성이 있다할 것입니다. 서울의제21을 담당하는 담당자와 관련자만 아는 용어나 법이라면 법(조례)으로써 가치가 없다 할 것이므로 우리 시민 누구나 조례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
둘째, 동 개정조례안 제11조(환경보전계획)4항과 제26조(시민참여등)에 관한 의견입니다.

- 동조례 제11조(환경보전계획)제4항중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립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.
- 또한 동조례안 제26조(시민참여 등)제3항중에서 녹색서울시민위원회가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의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저촉된다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할 것입니다.
-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(환경보전자문위원회)제1항“환경보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 하에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고, 시·도지사 소속 하에 시·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며 시장·군수·구청장 소속 하에 시·군·구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” 하였고, 제2항은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,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·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”라고 규정하였습니다.
- 따라서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의무적으로 두어야하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당연히 두어야하며 조례에 위임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, 운영, 기타 필요한 사항만을 조례에서 융통성 있게 규정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. 물론, 집행부에서 주장하는 각종위원회의 통폐합과 중복의견 수립 등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이 되나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 체계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할 것이므로 충분한 토의와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끝으로 조례개정 시기에 대한 의견입니다.

-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조례인 경우는 그 근거가 되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단기간 내에 개정하여야 함이 옳다 할 것이나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이 1999. 12. 31개정되었으나 3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조례에 반영한 것은 경미한 용어나 자구수정일지라도 문제가 있다할 것이므로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맡은바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.

서울특별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경 위

- 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의안번호 : 제 320 호
- 다. 제출일자 : 2003. 9. 26
- 다. 회부일자 : 2003. 9. 29

2. 제 안 사 유

- 자연환경 보전가치가 높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생태계 보전지역을 개발 등으로 인한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생태계 보전지역안의 행위제한 및